

2025년 『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』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
(재)경북테크노파크는 세포배양 전후방 산업 내 기술 성숙도가 높은 핵심 소부장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 지원을 통하여 경북 세포배양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「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」 사업의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4일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① 사업 목적

- 세포배양 관련 제품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활성화로 유망 중소기업 육성
- 경상북도 세포배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
- 세포배양 제품개발을 위한 신원료 및 첨가물 등록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용화 목적의 사업화 지원

② 사업 개요

- 공 고 명 : 2025년 「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」사업
- 지원기간 : 2025. 04. ~ 2025. 11. (8개월)
- 총지원규모 : 총550,000,000원(금오억오천만원)
- 지원대상 : 경상북도 소재 기업 및 사업 공고일 이전 지자체* 업무협약 체결 기업
* 지자체 :경상북도 또는 의성군
- 지원내용 : 기업별 50백만원~80백만원 차등지원

프로그램명	지원내용	지원금규모	총지원예산
기술 고도화	- 세포배양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(TRL) 6단계 이상 개발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기술 및 상용화 연구 지원 - 국내·외 공인기관을 통한 COA(Certificate of Analysis) 안전성 평가 지원 등	최대 80백만원에서 50백만원 차등지원	550백만원 이내

※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※ 총사업비(A+B) = 지원금(A)+기업부담금(B=지원금의 20%,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)

- ※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해 고득점 기업부터 순위별로 차등지원
- ※ 자부담(기업부담금)은 기업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매칭되어야 함

3 지원 자격 및 조건

○ 신청자격

- 경상북도 소재 기업 및 사업 공고일 이전 경상북도 혹은 의성군과 업무협약 체결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○ 신청 제외대상

- 지원 분야 및 대상이 본 사업과 상이한 경우 및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정산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※ 지원제외 적용 시점은 공고일 기준임

○ 사전 지원제외 대상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
- ③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,0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-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
 - *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*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 또는 부적정"
- ⑦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⑧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
- 가점사항 (최대 10점을 넘지 못하며,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)
 - 경상북도 혹은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(5점)
 - 관련 생산 기업(수요기업)에 공급계약(구매확약서 등)을 맺은 기업(5점)
 - 벤처인증, 이노비즈 인증,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(각 2점)
 -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(2점)

4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제출 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
- 접수방법 :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://www.gbtp.or.kr>)내 해당 사업공고
 - *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gbtp.or.kr) - 공고·안내 - 사업공고 - 경북TP
- 공고기간 : 2025.03.24.(월) ~ 2025.03.28.(금)
- 접수기간 : 2025.03.31.(월) ~ 2025.04.10.(목) 18시까지

담당자	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	나형진 책임연구원	연락처	053-819-8120
		김지우 전임연구원		053-819-8126
주 소	(38412)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 18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401호			
E-mail	나형진 책임연구원	hjna@gbtp.or.kr		
	김지우 전임연구원	jwkim1316@gbtp.or.kr		

○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	
		원본	사본
필수	① (별지1) 참여신청서	1부	
	② (별지2) 사업계획서	1부	
	③ (별지3) 자부담(기업부담금) 납입 약약서	1부	
	④ (서식1) 개인정보이용(제공 · 조회) 동의서	1부	
	⑤ (서식2)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	1부	
	⑥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1부	
	⑦ (서식4) 제출서류 체크리스트(우대사항 증빙 서류 포함)	1부	
	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1부	
	⑨ 사업자등록증		1부
	⑩ 최근 2개년 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		각1부
	⑪ 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2개년도, 23~24년도 자료) ※ 개인사업자 경우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22~23년도 자료) (※국세청 발급, 결산 미 확정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대체 가능)		각1부
해당시	우대사항 증빙자료 (우대사항 적용 항목 참조, 증빙서류 확인 시에만 가점 부여) - 경북 지역 내 기업이면서, 경상북도 혹은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- 관련 생산 기업(수요기업)에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 - 벤처인증, 이노비즈 인증,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-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		

- ※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료비, 외부시험·검사비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
- ※ 시험성적서는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
- ※ 우대사항 해당 시 관련 서류 제출 必

5 일정 및 평가

○ 일정

추진절차

수행주체

추진일정



※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○ 선정 평가 및 협약체결

-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
-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 사업계획 적절성, 사업역량 우수성,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
-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
- 평가 시, 신청 접수 기업 중 우대사항 적용과 해당 기업 가점 부여
-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,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함

※ 종합 평점 7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합격 기업으로 선정하고 포기 기업 발생 시 지원함

-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
- 협약체결 : 선정된 지원기업 ⇔ 경북테크노파크
 - ※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·보완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
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

○ 완료 보고서 제출

- 사업비는 추진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, 입금 또는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
 - ※ 비용거래 내역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제출할 것
- 추진기업은 협약 최종일 15일 이전에 별지6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(증빙서류는 협약 마감일 까지 제출 가능)

○ 최종(종료)평가

- 주관기관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, 결과물의 사업화 및 목표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(종료)평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로 70점 이상 이면 "성공", 70점 미만이면 "실패"로 판정함
- 평가결과 "실패"로 판단된 과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지금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

7 기타사항

○ 기업 모니터링(중간실사)

- 사업수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협약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- 모니터링 결과 협약기업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사업진행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의 취소가 가능함

○ 사후관리

-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실용화지원으로 인한 성과 (매출, 수출, 고용 등)조사를 지원기업에 요청할 수 있음

○ 협약의 변경

- 변경 절차

- 운영과제의 일부 내용(추진기업의 주요변경사항 등)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
- 관리기관장은 추진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해 종래 협약서로 추진할 때 과제의 목표 달성에 애로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

※ 단,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, 사업 목표 및 비용의 축소, 기간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

- 첨부 서류 : [별지 5호] 변경승인 요청서

- 유의 사항

- 변경 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(필요시 입증자료를 첨부)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
- 추진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, 기업의 양도, 인수·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(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의견에 따라 결정)

○ 지원금 지급 관련 (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에만 해당)

- 추가 서류 제출 (필수)

- 기업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사본 (사업비 관리 및 지출, 지원비 지급용)

- 이행보증보험증권
 - ※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되어야 사업비 선지급 가능
 - [별지 4] 협약서 (관리기관에서 준비할 예정임)
 - [별지 6] 결과 보고서 (사업 수행 완료 후)
 - 필요 시 제출 자료
 - [별지 5] 변경승인 요청서 (사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에만)
 - 협약 후 15일 이내 기업부담금(민간부담금)이 입금확인 후 해당기업에게 보조금을 선지급
- 상세 내용은 「2025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사업관리 지침」에
따르며,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
수 있음
-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할 수 있음